

## 2026년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 1. 공고개요

- (기 간) 2025. 11. 28.(금) ~ 2025. 12. 10.(수) / 13일간
- (대 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1~3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보조금 없음)
  - [신규(1회차)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보조금 지원) 예비 비예산,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이내
  - ※ '26년도 道, 시군, 정부예산(안)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부담비율 : 국 50%, 도 15%, 시군 35%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예비 마을기업 신청 기업은 자부담(100%)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자부담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 ○ (자립 지원)

- 교육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 (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2. 지정요건 (4가지)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p>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li> <li>-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li> </ul>

####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道)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관련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년마을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배경) 마을기업에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li> <li>&gt;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li> <li>&gt;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li> </ul> </li> <li>◦ <b>인구감소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대상)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89개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9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li> </ul> </li> <li>&gt;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자부담 경감(20%→10%)</li> </ul> </li> </ul>
--

### 3. 의무교육 이수

대상	교육명 (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 시기	교육내용(안)
<b>예비, 신규</b> (1회차)	<b>신규교육 입문</b>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포함)	광역시(道) 심사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b>재지정</b> (2회차), <b>고도화</b> (3회차)	<b>전문교육 기본</b>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포함)	광역시(道) 심사 전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마을에듀(www.우리마을에듀.org) 온라인 교육 활용

- 문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041-456-8132 ~ 4)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광역(道)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11. 28.(금) ~ 12. 10.(수) / 13일간 ※기한 엄수
- (신청방법) 방문신청(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시군에서 정하는 방법
- (접수처) 기업소재지 시·군청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서	전화번호	기관	부서	전화번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2214	금산군	경제과	041)750-3023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2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13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120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2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4074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30-6049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355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3218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27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708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41)456-8132~4
당진시	기업육성과	041)350-4573			

- (제출서류) ※ 작성기준은 현재 기준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 통	① 사업신청서(회차별 마을기업 지원 서식1-1~4)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자부담 통장 ⑥ 법인 및 마을기업 회원 명부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와 법인 회원(출자자)가 동일해야 함) ⑦ 마을기업 회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⑧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추가 (회차별)	예비, 신규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재무제표('24년도) ※ '25년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이 1회차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할 경우 -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실적보고서('24년도), 정산서류('24년도), 재무제표('24년도)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24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24년도)
	고도화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24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24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군에서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5. 심사기준

### ○ 예비·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li> <li>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li> <li>입문교육 이수</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li> <li>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li> <li>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li> <li>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li> </ul>
공공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li> <li>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li> <li>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li> <li>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li> </ul>
지역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li> <li>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li> <li>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li> <li>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li> </ul>
기업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li> <li>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li> <li>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li> <li>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li> <li>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li> </ul>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li>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li> </ul>
가점	최대 5	3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li> <li>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li> <li>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li> </ul>
		2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li> <li>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li> <li>※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li> <li>※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li> </ul>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10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1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2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3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4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5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6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7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8	해수부	어촌뉴딜300
1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21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22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3	행안부	정보화마을
24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5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6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li> <li>■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li> <li>■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li> <li>■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li> <li>■ 전문교육 이수</li> </ul>
공공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li> <li>■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li> <li>■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li> <li>■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li> </ul>
지역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li> <li>■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li> <li>■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li> <li>■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li> </ul>
기업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li> <li>■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li> <li>■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li> <li>■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li> <li>■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li> </ul>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li> <li>■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li>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li>■ 단가 산출의 적정성</li> </ul>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li> <li>■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li> </ul>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li> <li>■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li> <li>■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li> </ul>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p>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li> <li>■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li> <li>■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li> <li>■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li> <li>■ 전문교육 이수</li> </ul>
공공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li> <li>■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li> <li>■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li> <li>■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li> </ul>
지역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li> <li>■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li> <li>■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li> <li>■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li> </ul>
기업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li> <li>■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li> <li>■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li> <li>■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li> <li>■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li> </ul>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li> <li>■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li>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li>■ 단가 산출의 적정성</li> </ul>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li> <li>■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li> </ul>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li> <li>■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li> <li>■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li> </ul>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p>

## 6.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공고(道) 및 접수(시군)	2025. 11. 28.(금) ~ 2025. 12. 10.(수)	희망단체 → 시·군
신청단체 현지조사	2025. 12. 15.(월) ~ 2025. 12. 22.(월)	시·군, 지원기관
적격검토, 서류제출 등 추천	2025. 12. 26.(금)	시·군 → 道
道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2026. 1월 中	道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	~ 2026. 1. 16.(금)	道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	2026. 2월 中	행정안전부

## 7.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 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道, 시군에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8. 기타사항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041-635-221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041-456-8132~4) 또는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